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11 선고 2020가단691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구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곽경화, 박한결

피고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서

변론 종결2021. 10. 21.

판결 선고2021. 11. 11.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2,090,268원 및 그 중 21,240,162원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20. 3.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3. 9. 접수 제57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A와, 2014. 7. 21.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5. 7. 17.(이후 2020. 7. 10.로 변경)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5. 6. 24. 신용보증원금 1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20. 6. 23.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14. 7. 21. 20,000,000원, 2015. 6. 24.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외에도 이행일 이후의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8. 1. 1.부터 연 10%이다.

2) 2020. 2. 29. 피고 A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9. 1.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에 21,240,162원(= 20,428,928원 + 811,23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피고 A가 보증기간 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미수추가보증료 53,240원(= 51,280원 + 1,960원)이 발생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으로 대지급금 796,866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22,090,268원(= 대위변제금 21,240,162원 + 미수추가보증료 53,240원 + 대지급금 796,86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1,240,16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2. 10.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및 피보전채권의 발생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A는 2020. 3. 9.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3. 9. 접수 제579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갑 제8호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2020. 2. 29. 피고 A의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피고 A가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실제로 원고가 2020. 9. 1.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A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 A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 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7226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62246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1. 김천시 D 대 60㎡[별지 제1부동산]	4,920,000원	감정축택결과(갑 제11호증)
2. 김천시 E 대 248㎡[별지 제2부동산]	20,336,000원	
3. 김천시 D, E 지상 건물[별지 제3부동산]	1,988,700원	
4. 김천시 F 답 3494㎡[별지 제4부동산]	101,326,000원	
5. 대구 북구 G H호	117,000,000원	갑 제10호증
6. 대구 북구 I 소재 임대차보증금	24,800,000원	을 제5호증
합계	270,370,700원	

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J은행	106,496,000원	2021. 5. 26.자 N금융거래정보 회신서
K	4,466,000원	
L조합 현금서비스	300,000원	
M카드	950,000원	
O조합	80,282,070원	2021. 4. 13.자금융거래정보회신
C	20,800,000원	갑 제7호증
피고 B	109,660,000원	2020. 12. 21.자 피고 B답변서 참조
합계	322,954,070원	

이와 같이,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하게 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B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나.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B는 피고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 A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고 분할해서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대여금 및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수익자인 피고 B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피고 A와 피고 B의 관계, 금전거래 경위 및 기간과 그 액수, 금전소비대차 당시에는 별다른 담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고 A가 2020. 2. 29.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직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에다가 피고 B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 A가 피고 B와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손원락

별지